「행정사건소송법」

[법률 소화 37<1962>년제 139 호, 2016.11.28. 최종개정]

원문	번역본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一条（この法律の趣旨） 行政事件訴訟について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제1조(취지) 행정사건소송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二条（行政事件訴訟） この法律において「行政事件訴訟」とは、抗告訴訟、当事者訴訟、民衆訴訟及び機関訴訟をいう。	제2조(행정사건소송) 이 법에서 “행정사건소송”이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을 말한다.
第三条（抗告訴訟） この法律において「抗告訴訟」とは、行政庁の公権力の行使に関する不服の訴訟をいう。 ２ この法律において「処分の取消しの訴え」とは、行政庁の処	제3조(항고소송) ① 이 법에서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불복 소송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처분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그 밖

分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次項に規定する裁決、決定その他の行為を除く。以下単に「処分」という。）の取消しを求める訴訟をいう。	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제3항에 따른 재결, 결정, 그 밖의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3 この法律において「裁決の取消しの訴え」とは、審査請求その他の不服申立て（以下単に「審査請求」という。）に対する行政庁の裁決、決定その他の行為（以下単に「裁決」という。）の取消しを求める訴訟をいう。	③ 이 법에서 “재결의 취소소송”이란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신청(이하 “심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밖의 행위(이하 “재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4 この法律において「無効等確認の訴え」とは、処分若しくは裁決の存否又はその効力の有無の確認を求める訴訟をいう。	④ 이 법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存否) 또는 그 효력 유무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5 この法律において「不作為の違法確認の訴え」とは、行政庁が法令に基づく申請に対し、相当の期間内に何らかの処分又は裁決をすべきであるにかかわらず、これをしないことについての違法の確認を求める訴訟をいう。	⑤ 이 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위법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6 この法律において「義務付けの訴え」と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行政庁がその処分又	⑥ 이 법에서 “의무이행소송”이란 다음의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 또는 재결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は裁決を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を求める訴訟をいう。 一 行政庁が一定の処分をすべきであるにかかわらずこれがされないとき（次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二 行政庁に対し一定の処分又は裁決を求める旨の法令に基づく申請又は審査請求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政庁がその処分又は裁決をすべきであるにかかわらずこれがされないとき。 7 この法律において「差止めの訴え」とは、行政庁が一定の処分又は裁決をすべきでないにかかわらずこれがされようと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行政庁がその処分又は裁決を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を求める訴訟をいう。	1.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때(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요구하는 법령에 기초한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그 행정청이 처분 또는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때 ⑦ 이 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第四条（当事者訴訟） この法律において「当事者訴訟」とは、当事者間の法律関係を確認し又は形成する処分又は裁決に関する訴訟で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法律関係の当事者の一方を被告とするもの及び公法上の法律関係に関する確認の訴	**제4조**(당사자소송) 이 법에서 “당사자소송”이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령 규정에 따라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는 것,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소송, 그 밖에

えその他の公法上の法律関係に関する訴訟をいう。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第五条（民衆訴訟） この法律において「民衆訴訟」とは、国又は公共団体の機関の法規に適合しない行為の是正を求める訴訟で、選挙人たる資格その他自己の法律上の利益にかかわらない資格で提起するものをいう。	**제5조**(민중소송) 이 법에서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법규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선거인 자격, 기타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격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第六条　（機関訴訟） この法律において「機関訴訟」とは、国又は公共団体の機関相互間における権限の存否又はその行使に関する紛争についての訴訟をいう。	**제6조**(기관소송) 이 법에서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분쟁에 대한 소송을 말한다.
第七条（この法律に定めがない事項） 行政事件訴訟に関し、この法律に定めがない事項については、民事訴訟の例による。	**제7조**(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행정사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第二章 抗告訴訟 **第一節 取消訴訟**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第八条（処分の取消しの訴えと審査請求との関係） 処分の取消しの訴えは、当該処分につき法令の規定により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おいても、直ちに提起することを妨げない。ただし、法律に当該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を経た後でなければ処分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8조**(처분의 취소소송과 심사청구와의 관계) ①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만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も、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裁決を経ないで、処分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一 審査請求があつた日から三箇月を経過しても裁決がないとき。	1. 심사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二 処分、処分の執行又は手続の続行により生ずる著しい損害を避け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	2.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三 その他裁決を経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	3.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第一項本文の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につき審査請求がされているときは、裁判所は、その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재판소는 그 심사청구에

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があるまで（審査請求があつた日から三箇月を経過しても裁決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を経過するまで）、訴訟手続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심사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第九条（原告適格） 処分の取消しの訴え及び裁決の取消しの訴え（以下「取消訴訟」という。）は、当該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を求めるにつ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処分又は裁決の効果が期間の経過その他の理由によりなくなつた後においてもなお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によつて回復すべ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を含む。）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제9조**(원고적격) ① 처분의 취소소송 및 재결의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이라 한다)은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처분 또는 재결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 밖의 이유로 없어진 후에도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로 회복되어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裁判所は、処分又は裁決の相手方以外の者について前項に規定する法律上の利益の有無を判断するに当たつては、当該処分又は裁決の根拠となる法令の規定の文言のみによることなく、当該法令の趣旨及び目的並びに当該処分において考慮されるべき利益の内容及び性質を考慮す	② 재판소는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 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의 문언 외에도 해당 법령의 취지 및 목적, 해당 처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의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한다. 법령

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法令の趣旨及び目的を考慮するに当たつては、当該法令と目的を共通にする関係法令があるときはその趣旨及び目的をも参酌するものとし、当該利益の内容及び性質を考慮するに当たつては、当該処分又は裁決がその根拠となる法令に違反してされた場合に害されることとなる利益の内容及び性質並びにこれが害される態様及び程度をも勘案するものとする。	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는 경우에 그 법령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계 법령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목적을 참작하고, 그 이익의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하게 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및 상태, 정도를 감안한다.
第十条（取消しの理由の制限） 取消訴訟においては、自己の法律上の利益に関係のない違法を理由として取消し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２　処分の取消しの訴えとその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を棄却した裁決の取消しの訴えと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裁決の取消しの訴えにおいては、処分の違法を理由として取消し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조**(취소의 이유제한) ① 취소소송에서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지 못한다. ② 처분의 취소소송과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재결의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지 못한다.

第十一条（被告適格等） 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処分又は裁決があつた後に当該行政庁の権限が他の行政庁に承継されたときは、当該他の行政庁。以下同じ。）が国又は公共団体に所属する場合には、取消訴訟は、次の各号に掲げる訴えの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被告と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処分の取消しの訴え　当該処分をした行政庁の所属する国又は公共団体 二　裁決の取消しの訴え　当該裁決をした行政庁の所属する国又は公共団体 ２　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が国又は公共団体に所属しない場合には、取消訴訟は、当該行政庁を被告と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り被告とすべき国若しくは公共団体又は行政庁がない場合には、取消訴訟は、当該処分又は裁決に係る事務の帰属する国又は公共団体を被告と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1조**(피고적격 등) ①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처분 또는 재결 후에 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 이하 같다)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소송: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재결의 취소소송: 해당 재결을 한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 ②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소송은 그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피고가 되어야 할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취소소송은 그 처분 또는 재결 관련 사무가 귀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4　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国又は公共団体を被告として取消訴訟を提起する場合には、訴状には、民事訴訟の例により記載すべき事項のほか、次の各号に掲げる訴えの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行政庁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一　処分の取消しの訴え　当該処分をした行政庁 二　裁決の取消しの訴え　当該裁決をした行政庁 5　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国又は公共団体を被告として取消訴訟が提起された場合には、被告は、遅滞なく、裁判所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訴えの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行政庁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は、当該処分又は裁決に係る第一項の規定による国又は公共団体を被告とする訴訟について、裁判上の一切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는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소송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정청을 기재한다. 1. 처분의 취소소송: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 2. 재결의 취소소송: 해당 재결을 한 행정청 ⑤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는 지체없이 재판소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소송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정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은 그와 관련된 제1항 규정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재판상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第十二条（管轄） 取消訴訟は、被告の普通裁判籍の所在地を管轄する裁判所又は処分若しくは裁決をした行政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２　土地の収用、鉱業権の設定その他不動産又は特定の場所に係る処分又は裁決についての取消訴訟は、その不動産又は場所の所在地の裁判所にも、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取消訴訟は、当該処分又は裁決に関し事案の処理に当たつた下級行政機関の所在地の裁判所にも、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国又は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若しくは別表に掲げる法人を被告とする取消訴訟は、原告の普通裁判籍の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次項において「特定管轄裁判所」という。）にも、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５　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管轄裁判所に同項の取消訴訟が提起された場合であつて、他の裁判所	제12조(관할) ① 취소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또는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 토지의 수용, 광업권 설정,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 관련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 소재지의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은 그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하여 사안을 처리한 하급행정기관 소재지의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 11<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이나 별표의 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제5항에서 “특정관할재판소”라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 규정에 따라 특정관할재판소에 동항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다른 재판소에

に事実上及び法律上同一の原因に基づいてされた処分又は裁決に係る抗告訴訟が係属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特定管轄裁判所は、当事者の住所又は所在地、尋問を受けるべき証人の住所、争点又は証拠の共通性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当該他の裁判所又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定める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사실상 및 법률상 동일한 원인에 따른 처분 또는 재결에 관련된 항고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특정관할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계속된 재판소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第十三条（関連請求に係る訴訟の移送） 取消訴訟と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請求（以下「関連請求」という。）に係る訴訟とが各別の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関連請求に係る訴訟の係属する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その訴訟を取消訴訟の係属する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取消訴訟又は関連請求に係る訴訟の係属する裁	**제13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취소소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구(이하 “관련청구”라 한다)관련 소송이 각각 다른 재판소에 계속하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는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취소소송 또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는 재판소가 고등재판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判所が高等裁判所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処分又は裁決に関連する原状回復又は損害賠償の請求 二 当該処分とともに一個の手続を構成する他の処分の取消しの請求 三 当該処分に係る裁決の取消しの請求 四 当該裁決に係る処分の取消しの請求 五 当該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を求める他の請求 六 その他当該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の請求と関連する請求	1. 해당 처분 또는 재결 관련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2. 해당 처분과 함께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다른 처분의 취소 청구 3. 해당 처분 관련 재결의 취소 청구 4. 해당 재결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 5.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요청하는 다른 청구 6. 기타 해당 청구 또는 재결의 취소 청구와 관련된 청구
第十四条（出訴期間） 取消訴訟は、処分又は裁決があつたことを知つた日から六箇月を経過したときは、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取消訴訟は、処分又は裁決の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4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 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処分又は裁決につき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又は行政庁が誤つ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教示した場合において、審査請求があつたときは、処分又は裁決に係る取消訴訟は、その審査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に対する裁決があつたことを知つた日から六箇月を経過したとき又は当該裁決の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③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분 또는 재결 관련 취소소송은 그 심사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 또는 재결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十五条（被告を誤つた訴えの救済） 取消訴訟において、原告が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らないで被告とすべき者を誤つたときは、裁判所は、原告の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被告を変更す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決定は、書面でするものとし、その正本を新たな被告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出訴期間の遵守について	**제15조**(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송의 구제) ①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재판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서면으로 하며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에 대하여는 새

は、新たな被告に対する訴えは、最初に訴えを提起した時に提起され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従前の被告に対しては、訴えの取下げ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5 第一項の決定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6 第一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7 上訴審において第一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裁判所は、その訴訟を管轄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⑦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 재판소는 그 소송을 관할재판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第十六条（請求の客観的併合） 取消訴訟には、関連請求に係る訴えを併合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訴えを併合する場合において、取消訴訟の第一審裁判所が高等裁判所であるときは、関連請求に係る訴えの被告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被告が異議を述べないで、本案について弁論をし、又は弁論準備手続において申述を	**제16조**(청구의 객관적 병합) ① 취소소송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1심재판소가 고등재판소인 때에는 관련청구소송의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동의한

したときは、同意したものとみなす。	것으로 본다.
第十七条（共同訴訟） 数人は、その数人の請求又はその数人に対する請求が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の請求と関連請求とである場合に限り、共同訴訟人として訴え、又は訴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場合には、前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제17조**(공동소송) ①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청구와 관련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十八条（第三者による請求の追加的併合） 第三者は、取消訴訟の口頭弁論の終結に至るまで、その訴訟の当事者の一方を被告として、関連請求に係る訴えをこれに併合して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取消訴訟が高等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제18조**(제3자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 제3자는 취소소송의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그 소송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여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취소소송이 고등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十九条（原告による請求の追加的併合） 原告は、取消訴訟の口頭弁論の終結に至るまで、関連請求に係	**제19조**(원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 ① 원고는 취소소송의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

る訴えをこれに併合して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取消訴訟が高等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２　前項の規定は、取消訴訟につい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百四十三条の規定の例によることを妨げない。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소송이 고등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소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 제143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다.
第二十条 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処分の取消しの訴えをその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を棄却した裁決の取消しの訴えに併合して提起する場合には、同項後段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処分の取消しの訴えの被告の同意を得ることを要せず、また、その提起があつたときは、出訴期間の遵守については、処分の取消しの訴えは、裁決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した時に提起されたものとみなす。	**제20조**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소송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병합의 제기가 있는 때에 처분의 취소소송은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二十一条（国又は公共団体に対する請求への訴えの変更）	**제21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청구에의 소의 변경)

裁判所は、取消訴訟の目的たる請求を当該処分又は裁決に係る事務の帰属する国又は公共団体に対する損害賠償その他の請求に変更することが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請求の基礎に変更がない限り、口頭弁論の終結に至るまで、原告の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訴えの変更を許すことができる。	① 취소소송의 목적인 청구를 해당 처분 또는 재결 관련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그 밖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판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前項の決定には、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② 제1항의 결정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訴えの変更を許す決定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当事者及び損害賠償その他の請求に係る訴えの被告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재판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및 손해배상, 그 밖의 청구소송의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訴えの変更を許す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5 訴えの変更を許さない決定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⑤ 소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第二十二条（第三者の訴訟参加）	**제22조**(제3자의 소송참가)
裁判所は、訴訟の結果により権利を害される第三者があるときは、当事者若しくはその第三者	①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때에 재판소는 당사자나 그 제3자의

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もつて、その第三者を訴訟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る。 ２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当事者及び第三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第三者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り訴訟に参加した第三者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５　第一項の規定により第三者が参加の申立てをした場合には、民事訴訟法第四十五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を準用する。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二十三条（行政庁の訴訟参加） 裁判所は、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以外の行政庁を訴訟に参加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若しくはその行政庁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決定をもつて、その行政庁を訴訟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재판소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 외의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あらかじめ、当事者及び当該行政庁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訴訟に参加した行政庁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四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및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二十三条の二（釈明処分の特則） 裁判所は、訴訟関係を明瞭に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被告である国若しくは公共団体に所属する行政庁又は被告である行政庁に対し、処分又は裁決の内容、処分又は裁決の根拠となる法令の条項、処分又は裁決の原因となる事実その他処分又は裁決の理由を明らかにする資料（次項に規定する審査請求に係る事件の記録を除く。）であつて当該行政庁が保有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求めること。 二 前号に規定する行政庁以外の行政庁に対し、同号に規定する	**제23조의2**(해명처분의 특칙) ① 재판소는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소속된 행정청 또는 피고인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재결의 내용, 처분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처분 또는 재결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타 처분 또는 재결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료(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제외한다)로서 그 행정청이 보유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 요청 2. 제1호의 행정청 외의 행정청에 대하여 동호에서 규정하는

資料であつて当該行政庁が保有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の送付を嘱託すること。 ２　裁判所は、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を経た後に取消訴訟の提起があつたときは、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被告である国若しくは公共団体に所属する行政庁又は被告である行政庁に対し、当該審査請求に係る事件の記録であつて当該行政庁が保有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求めること。 二　前号に規定する行政庁以外の行政庁に対し、同号に規定する事件の記録であつて当該行政庁が保有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の送付を嘱託すること。	자료로서 해당 행정청이 보유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송부 촉탁 ② 재판소는 처분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소속된 행정청 또는 피고인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심사청구에 관련된 사건의 기록으로서 해당 행정청이 보유하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 요청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청 외의 행정청에 대하여 동호에서 규정하는 사건의 기록으로서 해당 행정청이 보유하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송부 촉탁
第二十四条（職権証拠調べ）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証拠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証拠調べの結果について、当事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24조**(직권증거조사)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二十五条（執行停止） 処分の取消しの訴えの提起は、処分の効力、処分の執行又は手続の続行を妨げない。 2 処分の取消しの訴え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処分、処分の執行又は手続の続行により生ずる重大な損害を避け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処分の効力、処分の執行又は手続の続行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以下「執行停止」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処分の効力の停止は、処分の執行又は手続の続行の停止によつて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重大な損害を生ずるか否かを判断するに当たつては、損害の回復の困難の程度を考慮するものとし、損害の性質及び程度並びに処分の内容及び性質をも勘案するものとする。 4 執行停止は、公共の福祉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	제25조(집행정지) ①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정지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하지 못한다. ③ 재판소는 제2항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손해 회복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하며, 손해의 성질 및 정도, 처분의 내용 및 성질도 감안한다. ④ 집행정지는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とき、又は本案について理由がないとみえるとき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第二項の決定は、疎明に基づいてする。 6 第二項の決定は、口頭弁論を経ないで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あらかじめ、当事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第二項の申立てに対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8 第二項の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は、その決定の執行を停止する効力を有しない。	또는 본안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때에는 허용되지 못한다. ⑤ 제2항의 결정은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⑥ 제2항의 결정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第二十六条（事情変更による執行停止の取消し） 執行停止の決定が確定した後に、その理由が消滅し、その他事情が変更したときは、裁判所は、相手方の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執行停止の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立てに対する決定及びこれに対する不服については、前条第五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이유가 소멸하고 기타 사정이 변경된 때에 재판소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二十七条（内閣総理大臣の異議） 第二十五条第二項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は、裁判所に対し、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執行停止の決定があつた後においても、同様とする。 ２　前項の異議には、理由を附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異議の理由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処分の効力を存続し、処分を執行し、又は手続を続行しなければ、公共の福祉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事情を示すものとする。 ４　第一項の異議があつたときは、裁判所は、執行停止をすることができず、また、すでに執行停止の決定をしているときは、これ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５　第一項後段の異議は、執行停止の決定をした裁判所に対して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決定に対する抗告が抗告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	**제27조**(내각총리대신의 이의제기)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2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 처분을 집행 또는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제2항의 이유에 표시한다. ④ 재판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의 이의제기는 집행정지 결정을 한 재판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한 항고가 항고재판소에 계속되는 때에는 항고재판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は、抗告裁判所に対して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 6 内閣総理大臣は、やむをえない場合でなければ、第一項の異議を述べてはならず、また、異議を述べたときは、次の常会において国会にこれ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내각총리대신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条（執行停止等の管轄裁判所） 執行停止又はその決定の取消しの申立ての管轄裁判所は、本案の係属する裁判所とする。	**제28조**(집행정지 등의 관할재판소) 집행정지 또는 그 결정의 취소 신청의 관할재판소는 본안이 계속되는 재판소로 한다.
第二十九条（執行停止に関する規定の準用） 前四条の規定は、裁決の取消しの訴え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ける執行停止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	**제29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재결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三十条（裁量処分の取消し） 行政庁の裁量処分については、裁量権の範囲をこえ又はその濫用があつた場合に限り、裁判所は、その処分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30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特別の事情による請求の棄却） 取消訴訟については、処分又は裁決が違法ではあるが、これを取り消すことにより公の利益に著しい障害を生ずる場合において、原告の受ける損害の程度、その損害の賠償又は防止の程度及び方法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たうえ、処分又は裁決を取り消すことが公共の福祉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は、請求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当該判決の主文において、処分又は裁決が違法であることを宣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終局判決前に、判決をもつて、処分又は裁決が違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ことができる。 ３　終局判決に事実及び理由を記載するには、前項の判決を引用することができる。	**제31조**(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의 기각[1]) ① 재판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또는 재결이 위법이나 이를 취소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원고가 입는 손해의 정도,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방지 정도 및 방법,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함이 공공복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주문에 처분 또는 재결이 위법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국 판결 전에 판결로써 처분 또는 재결이 위법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종국 판결에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1] 한국; 사정판결

第三十二条（取消判決等の効力） 処分又は裁決を取り消す判決は、第三者に対しても効力を有する。 2 前項の規定は、執行停止の決定又はこれを取り消す決定に準用する。	제32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①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에 준용한다.
第三十三条 処分又は裁決を取り消す判決は、その事件について、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その他の関係行政庁を拘束する。 2 申請を却下し若しくは棄却した処分又は審査請求を却下し若しくは棄却した裁決が判決により取り消されたときは、その処分又は裁決をした行政庁は、判決の趣旨に従い、改めて申請に対する処分又は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は、申請に基づいてした処分又は審査請求を認容した裁決が判決により手続に違法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取り消された場合に準用する。 4 第一項の規定は、執行停止の決定に準用する。	제33조 ①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 ②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처분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한 재결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이 처분 또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 또는 심사청구를 인용한 재결이 판결에 의하여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한다.

第三十四条（第三者の再審の訴え） 処分又は裁決を取り消す判決により権利を害された第三者で、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訴訟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ため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攻撃又は防御の方法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ものは、これを理由として、確定の終局判決に対し、再審の訴えをもつて、不服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訴えは、確定判決を知つ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期間は、不変期間とする。 ４　第一項の訴えは、判決が確定し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34조**(제3자의 재심 소송) ①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에 피해를 입은 제3자로서 자기의 책임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 소송으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은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
第三十五条（訴訟費用の裁判の効力） 国又は公共団体に所属する行政庁が当事者又は参加人である訴訟における確定した訴訟費用の裁判は、当該行政庁が所属する国又は公共団体に対し、又はそ	**제35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재판은 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또는 효

れらの者のために、効力を有する。	력을 가진다.
第二節　その他の抗告訴訟	**제2절 그 밖의 항고소송**
第三十六条（無効等確認の訴えの原告適格） 無効等確認の訴えは、当該処分又は裁決に続く処分により損害を受けるおそれのある者その他当該処分又は裁決の無効等の確認を求めるにつ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で、当該処分若しくは裁決の存否又はその効力の有無を前提とする現在の法律関係に関する訴えによつて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제36조**(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해당 처분 또는 재결에 계속하는 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등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三十七条（不作為の違法確認の訴えの原告適格） 不作為の違法確認の訴えは、処分又は裁決についての申請をした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제37조**(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한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三十七条の二（義務付けの訴えの要件等） 第三条第六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義務付けの訴えは、一定の処分がされないことにより重大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かつ、その損害を避けるため他に適当な方法がないとき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２ 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重大な損害を生ずるか否かを判断するに当たつては、損害の回復の困難の程度を考慮するものとし、損害の性質及び程度並びに処分の内容及び性質をも勘案するものとする。 ３ 第一項の義務付けの訴えは、行政庁が一定の処分を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を求めるにつ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に規定する法律上の利益の有無の判断については、第九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５ 義務付けの訴えが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処分につき、行政	제37조의2(의무이행소송의 요건 등) ① 제3조제6항제1호의 경우에 의무이행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판단하는 경우에 손해회복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하며 손해의 성질 및 정도, 처분의 내용 및 성질도 감안한다. ③ 제1항의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 판단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의무이행소송이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그 소송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

庁がその処分をすべきであることがその処分の根拠となる法令の規定から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又は行政庁がその処分をしないことがその裁量権の範囲を超え若しくはその濫用とな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裁判所は、行政庁がその処分をすべき旨を命ずる判決をする。	정청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함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으로부터 분명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 또는 남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명령하는 판결을 한다.
第三十七条の三 第三条第六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義務付けの訴えは、次の各号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法令に基づく申請又は審査請求に対し相当の期間内に何らの処分又は裁決がされないこと。 二 当該法令に基づく申請又は審査請求を却下し又は棄却する旨の処分又は裁決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又は裁決が取り消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又は無効若しくは不存在であること。 2 前項の義務付けの訴えは、同項各号に規定する法令に基づく	제37조의3 제3조제6항제2호의 경우에 의무이행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 처분 또는 재결이 없을 것 2. 해당 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처분 또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 또는 재결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일 것 ② 제1항의 의무이행소송은 동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申請又は審査請求をした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따른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第一項の義務付けの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訴えをその義務付けの訴えに併合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訴えに係る訴訟の管轄について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訴訟の管轄は、第三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定めに従う。	③ 제1항의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소송을 그 의무이행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소송에 관련된 소송 관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이행소송에 관련된 소송 관할은 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따른다.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 同号に規定する処分又は裁決に係る不作為の違法確認の訴え	1.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련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二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 同号に規定する処分又は裁決に係る取消訴訟又は無効等確認の訴え	2.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련된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
4 前項の規定により併合して提起された義務付けの訴え及び同項各号に定める訴えに係る弁論及び裁判は、分離しない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 제기된 의무이행소송 및 동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관련된 변론 및 재판은 분리하여야 한다.

5　義務付けの訴えが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各号に定める訴えに係る請求に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かつ、その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処分又は裁決につき、行政庁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をすべきであること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の根拠となる法令の規定から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又は行政庁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をしないことがその裁量権の範囲を超え若しくはその濫用とな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裁判所は、その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処分又は裁決をすべき旨を命ずる判決をする。	⑤　의무이행소송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소송에 관련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의무이행소송에 관련된 처분 또는 재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이나 재결을 하여야 함이 그 처분이나 재결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에서 분명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청이 그 처분이나 재결을 하지 아니함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소는 그 의무이행소송에 관련된 처분 또는 재결을 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한다.
6　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裁判所は、審理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第三項各号に定める訴えについてのみ終局判決をすることがより迅速な争訟の解決に資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訴えについてのみ終局判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当該訴えについてのみ終局判決をしたときは、当事者の意見を聴い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소송에 대하여만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쟁송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에 대하여만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해당 소송에 대하여만 종국판결을 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て、当該訴えに係る訴訟手続が完結するまでの間、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訴訟手続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一項の義務付けの訴えのうち、行政庁が一定の裁決を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を求めるものは、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に係る処分の取消しの訴え又は無効等確認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그 소송에 관련된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의무이행소송에 관련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의무이행소송 중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재결의 요청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관련된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三十七条の四（差止めの訴えの要件） 差止めの訴えは、一定の処分又は裁決がされることにより重大な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損害を避けるため他に適当な方法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重大な損害を生ずるか否かを判断するに当たつては、損害の回復の困難の程度を考慮するものとし、損害の性質及び程度並びに	**제37조의4**(예방적 금지소송의 요건)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음으로 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적당한 방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판단하는 경우에 손해회복의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며 손해의 성질 및 정도, 처분 또는 재결의 내

処分又は裁決の内容及び性質をも勘案するものとする。 3　差止めの訴えは、行政庁が一定の処分又は裁決を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を求めるにつ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に規定する法律上の利益の有無の判断については、第九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5　差止めの訴えが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差止めの訴えに係る処分又は裁決につき、行政庁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をすべきでないこと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の根拠となる法令の規定から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又は行政庁がその処分若しくは裁決をすることがその裁量権の範囲を超え若しくはその濫用とな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裁判所は、行政庁がその処分又は裁決を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判決をする。	용 및 성질도 감안한다. ③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 판단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예방적 금지소송이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련된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이나 재결을 하지 말아야 함이 처분이나 재결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에서 분명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청이 그 처분이나 재결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 재판소는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한다.

第三十七条の五（仮の義務付け及び仮の差止め） 義務付けの訴え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義務付けの訴えに係る処分又は裁決がされないことにより生ずる償うことのできない損害を避け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り、かつ、本案について理由があるとみえ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仮に行政庁がその処分又は裁決を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以下この条において「仮の義務付け」という。）ができる。 ２ 差止めの訴えの提起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差止めの訴えに係る処分又は裁決がされることにより生ずる償うことのできない損害を避け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り、かつ、本案について理由があるとみえ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決定をもつて、仮に行政庁がその処分又は裁決を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以下この条において「仮の差止め」という。）ができる。	**제37조의5**(임시의무이행 및 임시예방적금지) ①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에 관련된 처분 또는 재결이 없어 발생하는 배상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본안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일 때에 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임시로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할 것을 명령(이하 본조에서 “임시의무이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에 관련된 처분 또는 재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본안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일 때에 재판소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임시로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이하 본조에서 “임시예방적금지”라 한다)할 수 있다.

3　仮の義務付け又は仮の差止めは、公共の福祉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第二十五条第五項から第八項まで、第二十六条から第二十八条まで及び第三十三条第一項の規定は、仮の義務付け又は仮の差止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 5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五条第七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又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六条第一項の決定により仮の義務付けの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当該行政庁は、当該仮の義務付けの決定に基づいてした処分又は裁決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임시의무이행 또는 임시예방적금지는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2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임시의무이행 또는 임시예방적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7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 또는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의무이행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그 임시의무이행 결정에 따른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三十八条（取消訴訟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十一条から第十三条まで、第十六条から第十九条まで、第二十一条から第二十三条まで、第二十四条、第三十三条及び第三十五条の規定は、取消訴訟以外の抗告訴訟について準用する。	**제38조**(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2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は、処分の無効等確認の訴えとその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を棄却した裁決に係る抗告訴訟と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第二十条の規定は、処分の無効等確認の訴えをその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を棄却した裁決に係る抗告訴訟に併合して提起する場合に準用する。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처분의 무효등확인소송과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관련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은 처분의 무효등확인소송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관련된 항고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第二十三条の二、第二十五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及び第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は、無効等確認の訴えについて準用する。	③ 제23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4　第八条及び第十条第二項の規定は、不作為の違法確認の訴えに準用する。	④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第三章　当事者訴訟	**제3장　당사자소송**
第三十九条（出訴の通知） 当事者間の法律関係を確認し又は形成する処分又は裁決に関する訴訟で、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法律関係の当事者の一方を被告とするものが提起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当該処分又は裁	**제39조**(제소의 통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 또는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령 규정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 재판소는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에 그 내용을

決をした行政庁にその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통지한다.
第四十条（出訴期間の定めがある当事者訴訟） 法令に出訴期間の定めがある当事者訴訟は、その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後であつても、これ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十五条の規定は、法令に出訴期間の定めがある当事者訴訟について準用する。	**제40조**(제소기간의 규정이 있는 당사자소송) ① 법령에 제소기간의 규정이 있는 당사자소송은 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법령에 제소기간의 규정이 있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四十一条（抗告訴訟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三十三条第一項及び第三十五条の規定は当事者訴訟について、第二十三条の二の規定は当事者訴訟における処分又は裁決の理由を明らかにする資料の提出について準用する。 2 第十三条の規定は、当事者訴訟とその目的たる請求と関連請求の関係にある請求に係る訴訟とが各別の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おける移送に、第十六条か	**제41조**(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3조, 제24조, 제33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제23조의2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처분 또는 재결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그 목적이 된 청구의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재판소에 계속하는 경우의 이송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ら第十九条までの規定は、これらの訴えの併合について準用する。	이들 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四章 民衆訴訟及び機関訴訟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第四十二条（訴えの提起） 民衆訴訟及び機関訴訟は、法律に定める場合において、法律に定める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제42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四十三条（抗告訴訟又は当事者訴訟に関する規定の準用） 民衆訴訟又は機関訴訟で、処分又は裁決の取消しを求めるものについては、第九条及び第十条第一項の規定を除き、取消訴訟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2 民衆訴訟又は機関訴訟で、処分又は裁決の無効の確認を求めるものについては、第三十六条の規定を除き、無効等確認の訴え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3 民衆訴訟又は機関訴訟で、前二項に規定する訴訟以外のもの	**제43조**(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

については、第三十九条及び第四十条第一項の規定を除き、当事者訴訟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는 소송 외의 소송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五章 補則	**제5장 보칙**
第四十四条（仮処分の排除） 行政庁の処分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については、民事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に規定する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44조**(가처분의 배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보전법(평성 원년 <1989> 법률 제91호)에서 규정하는 가처분을 하지 못한다.
第四十五条（処分の効力等を争点とする訴訟） 私法上の法律関係に関する訴訟において、処分若しくは裁決の存否又はその効力の有無が争われている場合には、第二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三十九条の規定を準用す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り行政庁が訴訟に参加した場合には、民事訴訟法第四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ただし、攻撃又は防御の方法は、当該処分若しくは裁決の存否又はその	**제45조**(처분의 효력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①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그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그 효

効力の有無に関するものに限り、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政庁が訴訟に参加した後において、処分若しくは裁決の存否又はその効力の有無に関する争いがなくなつたときは、裁判所は、参加の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場合には、当該争点について第二十三条の二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を、訴訟費用の裁判について第三十五条の規定を準用する。	력의 유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한 후에 처분이나 재결의 존부 또는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없어진 때에는 재판소는 참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四十六条（取消訴訟等の提起に関する事項の教示） 行政庁は、取消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処分又は裁決をする場合には、当該処分又は裁決の相手方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で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処分を口頭で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処分又は裁決に係る取消訴訟の被告とすべき者 二 当該処分又は裁決に係る取消訴訟の出訴期間	**제46조**(취소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의 공개) ① 행정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 또는 재결에 관련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할 자 2. 처분 또는 재결에 관련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三　法律に当該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を経た後でなければ処分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旨	3.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만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2　行政庁は、法律に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に対する裁決に対してのみ取消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をするときは、当該処分の相手方に対し、法律にその定めがある旨を書面で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処分を口頭で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② 행정청은 법률에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에 그 규정이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行政庁は、当事者間の法律関係を確認し又は形成する処分又は裁決に関する訴訟で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法律関係の当事者の一方を被告とするもの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処分又は裁決をする場合には、当該処分又は裁決の相手方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で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処分を口頭で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③ 행정청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 또는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령 규정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当該訴訟の被告とすべき者	1. 소송의 피고인
二　当該訴訟の出訴期間	2. 소송의 제소기간